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6호 2018. 1. 26(금)

<b>선 람</b>	기관의 장

<b>공고</b>
-----------

○남원시	공고 제2018- 157호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입법예고 공고	1
○남원시	공고 제2018- 163호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	8
○남원시	공고 제2018- 16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	1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18 -157호

「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25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시관 내 애완동물을 동반한 관람객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기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장애인 보조건 출입을 허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차별적 보조건 입장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10조제1호)
- 나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(1) 우편번호 : 55738
- (2) 주 소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

- 서면, 팩스(063-620-6707), 직접 방문,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(☎063-620-61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### 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
-----	---

##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1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

### 1. 개정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시관 내 애완동물을 동반한 관람객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기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장애인 보조건 출입을 허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차별적 보조건 입장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10조제1호)
- 나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문화재 보호법」, 「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「민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1. 25. ~ 2018. 2. 14.(20일간)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과”를 “뜻은 다음 각 호와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구입하고자 할 때”를 “구입하려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“진위여부에 관하여”를 “진위여부 감정시”로 한다.

제8조 제1항 제2호 중 “인하여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애완동물(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힌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)을 동반한 사람

제15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당해 유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진위여부에 관하여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

③ (생략)

제8조(개관 및 휴관)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전시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

② (생략)

제10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- 1. 애완동물을 소지한 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

2. ~ 5. (생략)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  
-----  
---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진위여부 감정시 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개관 및 휴관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 
시장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관람의 금지) -----  
-----  
-----.

- 1. 애완동물(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.)을 동반한 사람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시행규칙) -----  
-- 필요한-----  
-----.

## 남원시 공고 제2018-163호

「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남 원 시 장  
2018년 01월 31일



##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 정 이 유

- 행정안전부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 요 내 용

#### 가. 목적 및 재정지원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

#### 나.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, 출연금의 지급(안 제3조, 안 제4조)

-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 시장에게 제출
-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인 지급신청서 시장에게 제출 후 출연금 지급

#### 다. 결산서 제출(안 제5조)

-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

### 3. 의 견 제 출

「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」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

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원시장(참조 : 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남원시청 감사실

다. 의견제출방법

- 우편/방문 : 55752 남원시 시청로 60 (도통동, 남원시청 감사실)
- E-Mail : yun61@korea.kr
- 전화문의 : 063-620-6976
- FAX : 063-620-6781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## 자치법규명 :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

- 제출인 성명 : \_\_\_\_\_
- 주 소 : \_\_\_\_\_
-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- 의 견 내 용 : \_\_\_\_\_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

2018년    월    일

남원시장 귀하

#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8. 1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감 사 실 장

## 1. 제정이유

행정안전부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재정지원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

나.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, 출연금의 지급(안 제3조, 안 제4조)

-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 시장에게 제출
-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인 지급신청서 시장에게 제출 후 출연금 지급

다. 결산서 제출(안 제5조)

-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01. 31. ~ 2018. 02. 20(20일간)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재정지원)**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국지역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**제3조(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)**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출연금의 지급)**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.

제5조(결산서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남원시 공고 제2018-165호

## 무연고 사망자 공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(유골)를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월 25일

남 원 시 장

## 1.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

성명	성별	생년월일	발견일시	본 적	발견장소	사망원인	비고
				주 소	안치장소		
신원불상		2017.8.30 13시 00분경	신원불상		전북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10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	미상	화장후 납골
					전북 남원시 솔터길 40-36 승화원		

2. 공고 기간 : 2018. 1. 25 ~ 2018. 2. 24

## 3. 사체의 특성 및 발생 상황

사망자는 2017. 8. 30. 13시경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10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와운마을 구 오솔길 약 500m 지점 야산에서 발견되어 신원불상으로 행정처리 의뢰됨.

4. 처리방법 : 화장 후 납골

5. 납골기간 : 10년

6. 납골장소 : 전북 남원시 솔터길 40-36 승화원

7. 연 락 처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(☎ 063-620-6833)